

#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6월 11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국 토 교 통 부 장 김 현 미

## ●대통령령 제30781호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및 제58조의2를 각각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으로 하고, 제3장에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6조제3항제1호”를 “법 제10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6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6조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6조제3항제3호”를 “법 제106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6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6조제3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6조제3항제5호”를 “법 제106조제3항제7호”로 한다.

나.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1호	500
아. 법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6호	500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특정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령**

●국방부령 제1022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역연금 등의 청구) ① 「군인연금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여금 반환(기여금을 낸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수당(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해당 청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영 제9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여금 반환(유족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급여,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또는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